

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

(한국보건 의료연구원 2018. 8. 3.)

I. 법 제11조제1항제1호

- 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

연번	위원회명	위원총원(명)	공무수행사인(명)	설치근거규정(조항)
1	이사회	13	0	「보건 의료기술진흥법」 제22조
2	연구윤리심의위원회	140	124	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 (법률 제13651호 제10조)
3	연구기획관리위원회	12	5	「연구기획관리규정」 제7조

※ 신의료기술평가사업 관련 위원회는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공개

II. 법 제11조제1항제2호

-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

연번	법인·단체·기관명	공무수행사인(명)	위임·위탁규정(조항)
해당 사항 없음			

III. 법 제11조제1항제3호

-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

연번	파견인원(명)	파견근거규정(조항)
해당 사항 없음		

IV. 법 제11조제1항제4호

-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

연번	법인·단체명	공무수행사인(명)	심의·평가규정(조항)
해당 사항 없음			